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자치행정과)

의안번호	제167호
제 출 자	경수현 의원 외 11명 (2023. 08. 21.)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8조에 의하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만을 규정하여 서면 회의 심사에 대한 지급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나.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구분하고, 서면 심의 등을 포함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존재함
- 다. 이에 서면 심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자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라. 한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위원회 운영 실적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규정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참석 수당과 심사 수당을 규정함

(안 제18조제1항)

나. 조문의 자구 체계를 정비함

(안 제18조제2항, 제3항)

다. 의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9조제3항,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3. 8. 21. ~ 2023. 8. 26.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위원회의 서면 회의 심사 수당과 지급 방식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각종 위원회에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구분하고 서면 심의 등을 포함한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 된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8조(수당)** :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를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19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¹⁾** : 종전 조례 제19조제1 및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및 내역 및 위원회 정비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제3항 운영현황을 매년 5월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제4항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는 것을 신설하였음.

1) 제19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2.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3.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통합·폐지 등 정비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수당체계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취합한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실한 활동을 도모하고 구민에 대한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됨.